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26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76	서영석	'26. 1. 12.	'26. 3.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212	백종헌	'26. 1. 21.	'26. 3. 10.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3. 13.)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2조제15호의2 가목).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 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 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의2가목 중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을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용량·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분석·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

· 장비·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3조의2의 제목“(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를“(격리자 등에 대한 격리 및 해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생제 사용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5. (생략)</p> <p>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u>접촉하거나 접촉의 의심되는 사람</u>(이하 “접촉자”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생략)</p> <p>16. ~ 21. (생략)</p> <p>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생략)</p> <p>② <u>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 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u></p>	<p>제2조(정의) -----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5의2.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 ----- -----<u>전과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u>-----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현행과 같음)</p> <p>16. ~ 21.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u> <u>각 호의 사항</u>----- --.</p>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1. 정책목표 및 방향

2.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종류·용량·사용기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4.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항생제의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위한 기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6.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에 관한 정보수집·분석·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

7.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

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관리 및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
· 시설 · 장비 ·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 · 범위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43조의2(격리자 등에 대한 격
리 및 해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41조, 제42조제2항 · 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
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
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입
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
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
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